

국 제 소 롭 티 미 스 트 미 주 연 합 회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INC.°)

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법인 정관

목차

l. 명칭	2
II. 목적 및 권한 규정	2
III. 기구 조직	3
IV. 회원 클럽	4
v. 클럽 회원 자격	4
VI. 임원; 상임이사	5
VII. 총회	9
VIII. 이사회	10
IX. 위원회	16
x. 회계 사항	17
XI. 의회 권한	18
XII. 개정	18
XIII. 해산	20

정관

국제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INC.)

(펜실베이니아 소재 비영리 법인)

소롭티미스트 재단(The Soroptimist Foundation) (차후 "연맹"이라고 칭함)이라는 명칭으로 종전에 알려진 국제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Inc.)의 정관은 2010년 12월 3일에 채택되었고, 2012년 12월, 2015년 1월, 2020년 12, 2022년 12월, 2024년 12월에 우편 투표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개정 정관은 종전 및 현존하는 연맹의 모든 정관을 갈음한다.

제I조

명칭

1.01 국제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국제소롭티미스트 미주엽합회(SIA)는 국제 소롭티미스트라는 문구를 본 연맹의 명칭에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 국제소롭티미스트(SI) 산하 연맹이다.

1.02. 등록 마크 (Registered Marks). 연맹은 연맹의 명칭과 마크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하고 허가되지 않은 상업적 재판매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조 목적 및 권한 규정

2.01 목적. 연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여성과 소녀가 각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갖는다는 비전을 추구한다.
- (b) 여성과 소녀에게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 (c) 국제소롭티미스트 및 기타 소롭티미스트 연맹과 협력한다.

연맹의 이사, 임원, 고문 또는 대리인은 연맹을 통해, 또는 연맹을 대신하여 다음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 또는 활동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a) 1986년 개정 미국 내국세법(이하 '세법'이라 한다) 제501(c)(3)절에 의거하여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는 기관; (b) 세법 170절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수령하는 기관. 연맹은 공직 후보를 위한 정치적 선거 운동에 참가 또는 개입(성명서 공표 또는 배포 포함)하지 않는다. 연맹 활동의 실질적 부분은 세법 제501(c)(3)절에 의거한 연방 소득세 면세 기관에 대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전 또는 로비 활동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 이 규정은 이사 또는 임원이 행하는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2.02 취지. 이 정관은 회원 클럽과 이사회에 가장 큰 권한과 직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성격을 갖는다.
- 2.03 <u>해석</u>. 이 정관은 제한적이거나 금지적인 방식이 아닌 공정하고 광범위하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또한 펜실베이니아 주법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 2.04 <u>범위</u>. 연맹, 리전 및 클럽은 이 정관과 이 정관을 통해 승인받은 연맹 이사회에 의해 정립된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제III조 조직 구성

3.01 <u>연맹</u>. 연맹 회원 클럽의 자격은 연맹의 지리적 경계 내 혹은 연맹과 관련된 모든 지역 내에 설립된 모든 클럽에 주어진다.

3.02 <u>리전</u>. 연맹은 지리적으로 여러 개의 리전으로 나뉘며, 리전의 지리적 경계 내에 설립된 모든 클럽에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각 리전의 클럽은 리전의 정관에 따라 총재와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해당 정관 및 모든 개정안은 연맹의 검토 및 승인을 받고 각 리전 내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IV조 회원 클럽

4.01 <u>일반</u>. 클럽 구성 자격은 국제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클럽은 지역 사회에서 SIA 사명을 지지하는 개인을 회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02 <u>권리</u>. 양호 상태의 각 클럽은 법인 또는 비-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정관 또는 1988년 제정 펜실베이니아 비영리 법인 법에 따라 회원에게 제출되거나 회원의 투표가 필요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a) 제VIII조에 따른 이사회 위원 선출;
- (b) 제VI조에 따라 지정된 차기 회장 선출;
- (c) 연맹 규정 개정;
- (d) 연맹 정관 개정; 및
- (e) 국제소롭티미스트 절차에 따른 연맹 회장 선출.

4.03 <u>양호 상태(good standing)</u>. 이사회가 확립한 정관, 규정 및 절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클럽은 양호 상태의 클럽으로 간주된다.

제v조

클럽 회원 자격

5.01 <u>회원 자격과 회원 종류</u>는 국제소롭티미스트 미주연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은 클럽에 소속된 개인이어야 하며 회원 신분은 클럽 수준에서 연장된다. 회원의 종류와 정의는 아래와 같다:

(a) <u>정회원</u>. SIA의 비전, 사명 및 핵심 가치를 지지하는 모든 개인.

(b) <u>종신회원.</u> 1999년 정관에 명시된 '활동 회원' 또는 '은퇴 회원'의 정의에 부합하고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연맹에 의해 종신회원(Life Member)으로 지정된 회원은 원할 경우 평생동안 이러한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5.02 회원의 권리.

- (a) 클럽의 정관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참여를 한 회원은 누구든지 직책을 맡을 수 있으며, 발언, 발의 및 투표를 할 수 있다. 클럽은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회의 참석을 의무화할 수 없다.
- (b) 정회원 중 양호 회원만이 연맹 /리전 임원 또는 연맹/리전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되거나 해당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 (c) 회원 유형과 관계 없이 양호 회원은 모두 총회, 회의 또는 지구 회의에서 대의원이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d) 각 회원은 소롭티미스트 조직 내에서 한 개를 초과하는 선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의원; 연맹 총회 대의원; 리전 회의 혹은 지구 회의 대의원; 국제 소롭티미스트, 연맹, 리전 또는 클럽에서 활동하는 고문, 코디네이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지명위원회 포함).
- (e) 각 회원은 소롭티미스트 클럽 한 곳에만 소속될 수 있다. 회원이 다른 클럽으로 회원 자격을 옮기기를 희망하는 경우, 새로운 클럽은 이전 클럽으로부터 해당 회원의 모든 재정적 의무가 충족되었다는 서면 확인증을 받은 후에 회원 자격 이전을 수락할 수 있다.

제VI조

임원; 상임이사

6.01 <u>자격 요건 및 직함</u> 연맹 임원은 회장, 차기 회장 및 총무/재무이사로 구성된다. 한 사람당 한 개의 직책만 주어진다. 임원은 연맹 이사직을 겸임한다.

6.02 선출 및 임기. 매년 당해 회계연도 이사회의 이사 선출 후 9월 1일 이전에, 회장은 자신과 차기 회장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이사직을 수행할 차기 이사들과 같은 날 퇴임하는 전년도 이사 모두에게 차기 회장직에 입후보할 것을 추천한다. 관심이 있는 회원은 지정된 날짜까지 회신해야 하며 양호 상태의 클럽이 우편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세 사람 이상의 후보가 투표 대상인 경우, 각 클럽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 순위로 등급을 정하여 선호 순위 방식으로 투표한다. 투표 인원의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다.

매년 새로 구성된 이사회의 첫 번째 모임에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차기 회장의 직책을 맡지 않은 이사 중 한 명을 총무/재무이사로 선출한다. 회장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인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표를 얻은 사람이 총무/재무이사로 선출된다. 각 임원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또는 직책 수행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임원직을 수행한다.

6.03 회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하며 연맹의 전반적인 활동 및 운영을 지휘하되,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회장직을 맡기 위해서는, 직전 해 또는 직전 해의 일부 기간 동안 차기 회장직을 역임해야 한다. 회장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총회에서 직전 해 회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관해야 한다; (a)
- 이 정관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b)
- 이사회가 전략적 계획 수립, 연맹의 사명을 보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c) 정책에 대한 평가 의견 접수 등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이 상임이사를 통해 수행되고 이사회에서 (d) 평가받도록 관리한다:
- (e)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와 협의하여 총회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이사회와 연맹의 활동에 대한 정기 보고서가 클럽과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관리한다: (f)
-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승인을 얻어 국제소롭티미스트 위원회에서 활동할 연맹 소속 (g) 인원을 추천한다:
-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임원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h)
- 회장직과 관련된 다른 의무 및 이사회가 할당한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i)

6.04 차기 회장. 차기 회장은 회장 부재 시 이사회의 모든 회의와 총회에 참석하며 회장의 의무를 수행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이 수시로 할당하는 기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차기 회장이 자동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또한 차기 회장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회장직 수행에 대비한다: (a)
-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b)
- (c) 회장의 지도 하에 긴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며, 최대한 회장을 지원한다.

6.05 총무/재무이사. 총무/재무이사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와 총회에 참석하고 모든 조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총무/재무이사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이사회 회의 및 총회의 회의록을 준비한다: (a)
- 연맹의 자금이 재정적으로 책임있게 관리되고 연맹이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업무 관행에 (b) 따라 운영되도록 감독한다; 그리고
- 총무/재무이사 직책 관련 모든 의무와 이사회 또는 회장이 수시로 할당하는 기타 의무를 (c) 수행한다.

6.06 임원 보증. 모든 임원은 연맹의 부담으로 이사회가 요구하는 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통해 해당 직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6.07 무급. 어떤 임원도 연맹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6.08 상임이사. 이사회는 연맹의 최고경영책임자(CEO)를 겸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이사는 연맹의 임원이 아니므로 이사회 회의 또는 총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임이사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 또는 기타 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6.09 공석.

- (a) 회장직이 공석인 경우, 잔여 임기에 관계 없이 차기 회장 당선자가 자동으로 승계하고 차기 임기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 (b) 차기 회장직이 공석인 경우, 연맹에서 이사회 현재 구성원 중 입후보자를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 (c) 회장과 차기 회장직이 동시에 공석인 경우, 연맹이 클럽 선거를 추가로 실시할 때까지 이사회가 현재 구성원 중에서 회장 대행을 선출한다.
 - (i) 3월 1일 이전에 동시 공석이 발생할 경우, 공석 발생 후 90일 이내에 해당 직무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재임 이사 중에서 회장 및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받아 선출하고 회장 및 차기 회장의 잔여 임기를 완수하도록 한다.
 - (ii) 3월 1일 이후에 동시 공석이 발생할 경우, 회장 대행이 회장의 잔여 임기를 완수한다. 정상적인 선거 일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회장이 이미 선출되었거나 차기 회장직 선거가 진행 중인 경우, 선출된 자는 선출 직후부터 차기 회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9월 1일자로 회장직을 맡는다. 또한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추가로 실시한다. 해당 선거의 입후보자는 9월 1일부터 이사직을 시작하는 현재 이사회 위원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 (d) 총무/재무이사직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회장 또는 차기 회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한다.

6.10 <u>임원의 주의 및 정당한 신뢰의 기준</u>. 임원은 비영리 법인의 최대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 조사, 기술, 근면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선의로 임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원은 이와 같은 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 사람들이 작성하고 제출한 재무제표, 기타 재무 자료를 포함한 정보, 의견, 보고서 또는 성명서 등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다:

(a) 임원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유능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법인 또는 법인 관련 기관에 소속된 한 명 이상의 기타 임직원.

임원이 그러한 임직원의 전문적 또는 전문가적 역량에 속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사안에 (b) 관해 조언할 수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인원.

사안에 대한 신뢰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실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은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선의로 경영 판단을 내린 임원은 임원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 경영 판단의 대상이 임원, 임원의 동료 또는 제휴 기관의 자체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 내에서 경영 판단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b) 입수한 경우; 그리고
- 해당 임원이 법인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 판단을 내렸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c)

6.11 임원의 개인적 책임. 현재 유효하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 임원이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주법 제57조 C조항 참조), 및
- 그러한 의무 위반과 의무 불이행이 자체 거래, 고의적인 부정행위, 또는 무분별함에서 (b) 기인한 경우.

본 조항은 임원의 형법 위반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법에 따른 임원의 세금 미납에 관한 법적책임을 보호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은 향후 사항에만 적용되며 이러한 변경 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임원의 책임을 확대할 수 없으며 축소할 수는 있다.

제VII조

총회

7.01 총회. 연맹은 2년 주기로 짝수 연도마다 회원 클럽 총회를 개최하며, 장소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총회에 관한 공식 공지는 개최일에서 최소 6개월 이전에 게시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 완전한 정보를 최소 90일 이전에 클럽에 발송한다.

7.02 총회 투표. 양호 상태의 각 클럽은 대의원(임명된 대의원의 부재 또는 불능 시 대리할 대의원 포함)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임명된 대의원은 클럽의 회원으로서 소속 클럽을 대표하는 모든 투표권을 갖는다. 대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클럽만을 대표한다. 클럽을 대표하는 대의원, 연맹의 전직 회장, 리전 총재, 연맹 이사회의 구성원은 총회에서 표결하는 각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 투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7.03 <u>정족수</u>. 전체 양호 상태 클럽의 1/3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모든 총회의 정족수를 구성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의 의사를 결정한다. 양호 상태 클럽의 1/3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이전에 공지된 일반적 성격의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정족수는 자격위원회에 등록된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VIII조 이사회

8.01 <u>구성 및 재임 기간</u>. 이사회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한 13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장 또는 차기 회장이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잔존하는 경우 이사회는 1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사의임기는 선거가 열리는 해의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까지이며, 이사는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때까지 또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까지 이사직을 수행한다.

8.02 권한. 이사회는 연맹의 사업 및 업무를 이행, 관리 및 감독할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8.03 <u>자격 및 선출</u>. 연맹의 이사는 모두 성년의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어야 한다. 클럽 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은 해당 선거구의 이사로 선출될 자격을 갖는다. 해당 회원은 리전 총재가 되지 않을 것과 이사회 재직 기간 중 리전 또는 클럽의 어떠한 선출직도 맡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출된 이사의 임기와 이전 이사회 재직 기간 사이에 12개월 이상의 휴지기가 있어야 한다.

8.04 선거구. 선거구는 다음 지역의 클럽으로 구성된다:

- (a) <u>제1선거구:</u> 브라질 리전
- (b) M_2 선거구: 캐나다 동서부 리전
- (c) 제3선거구: 일본 미나미 및 니시 리전
- (d) M_4 선거구: 일본 히가시 및 키타 리전

- (e) 제5선거구: 한국 리전
- (f) 제6선거구: 멕시코/중미 및 아메리카 델 수르 리전
- (g) 제7선거구: 필리핀 리전
- (h) 제8선거구: 일본 츄오 리전
- (i) M_9 선거구: 카미노 레알, 데저트 코스트 및 골든 웨스트 리전
- (j) 제10선거구: 파운더, 시에라 네바다 및 시에라 퍼시픽 리전
- (k) 제11선거구: 센트럴 이스트 코스트, 미드웨스턴, 노스애틀랜틱, 사우스 센트럴 및 서든 리전
- (I) 제12선거구: 노스웨스턴 및 피크 투 플레인 리전
- (m) 제13선거구: 대만 리전

신규 리전이 추가되는 경우, 이사회가 위 선거구 중 한 곳으로 배정한다.

각 선거구별로 한 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이사는 순환 기반으로 선출되며 매년 한 그룹만이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각 이사의 후임자는 2년 임기로 선출되지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가진다. 이는 특정 연도에 총 이사 수의 60% 이상 또는 40% 미만이 선출되는 경우 선출 이사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8.05 <u>후보 추천</u>. 각 선거구는 수시로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매년 8월 1일 또는 그이전에, 총무/재무이사는 당해 연도에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구 내의 모든 클럽에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본부에서 심사하며, 출마에 동의한 회원은 이사회가 채택한 일정과 절차에 따라 표준화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거구에 두 개 이상의 리전이 포함되고 각 리전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소재한 클럽으로 구성된 경우, 선거구 내 회원 클럽은 이사 후보자를 선정할 리전 또는 국가를 적절한 순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순번이 돌아온 구역에서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순환제는 선거구 내 모든 클럽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5년마다 클럽의 투표를 통해 재확인 또는 갱신된다. 선거구 내 순환제를 결정 또는 재확인/갱신하기 위한 클럽의 모든 투표는 본부에서 관리한다. 순환제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선거구 내 클럽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연맹 이사회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8.06 선거. 본부는 당해 연도에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에서 투표 자격을 얻은 모든 양호 상태의 클럽에 우편 투표 용지 및 각 후보의 표준 이력서를 우송한다. 세 사람 이상의 후보가 투표 대상인 경우, 각 클럽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 순위로 등급을 정하여 선호 순위 방식으로 투표한다. 과반수의 표를 확보한 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8.07 <u>사임</u>. 연맹의 이사 또는 임원은 언제든지 연맹의 회장 또는 총무/재무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통보 접수일 또는 통보에 명시된 날짜부터 유효하다. 반드시 사임이 수리되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8.08 <u>해임</u>. 이사회는 연맹에 최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연맹의 모든 이사 또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임은 해임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해당 권리가 있는 경우)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해임은 해임 당사자를 제외한 재직 이사 2/3이 동의한 경우나 이사회회의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8.09 <u>공석</u>.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기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 회장은 해당 선거구에 이사회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선출된 회원은 임기 잔여 기간 동안 이사로 재직한다. 공석이 발생하고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에 이사회가 행동을 취한 사실은 해당 조치 또는 이사회의 행동 권한을 무효화하거나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10 <u>회의 장소</u>. 이사회의 회의는 연맹의 본부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장이나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안팎의 기타 장소에서 열릴 수 있다.

8.11 <u>정기 회의</u>. 이사회의 정기 회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 회계연도당 2회 이상 열린다.

8.12 <u>특별 회의</u>. 이사회의 특별 회의는 회장 혹은 두 명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특별 회의는 전화, 이메일 또는 전보의 경우 회의 개최일에서 최소 72시간 이전, 우편의 경우 10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항상 회의의 시간과 장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전쟁 피해나 공격, 핵 또는 원자력 사고 등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의에 관한 통보는 연락이 가능한 이사들에게 출판물이나 라디오 등과 같은 연락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8.13 주의, 정당성 있는 신뢰 및 경영 판단 규정의 기준.

- 이사는 연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맹의 최대 이익을 위한다는 a)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일반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유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근면,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 법에서 해당 문제에 관해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사안과 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1988 펜실베이니아 비영리 법인 법 5715(a)절(일반적인 권한 행사 관련) 또는 5716(a)절(대체 기준 관련)에 열거된 이익 및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문의를 포함한 주의를 기울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비롯한 이사로서의 의무를 선의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는 각 사례에서 다음 사람들이 작성한 재무제표, 기타 재무 자료를 포함한 정보, 의견, 보고서 또는 성명서 등을 선의로 신뢰해야 한다.
 - 이사가 해당 사안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판단하는 한 명 (i) 이상의 연맹 임원 또는 직원:
 - 이사가 사안에 있어 전문적 또는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ii) 판단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인원; 그리고
 - 이사가 속하지 않은 이사회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정되고 해당 (iii) 사안이 지정된 권한 내에 존재하며 이사의 합리적인 신뢰의 가치가 존재하는 위원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이사의 신뢰가 부당하다고 믿게 하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는 선의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선의로 경영 판단을 내린 이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사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경영 판단의 대상이 이사, 이사의 동료 또는 제휴사의 개인적 거래와 관련이 없는 (i) 경우;
- 해당 이사가 상황적으로 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 내에서 경영 판단의 (ii)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 해당 이사가 내린 경영 판단이 법인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iii) 경우.

- (b) 이사회, 이사회 위원 및 각 개별 이사는 각자 지위에 따른 의무 수행에 있어서, 연맹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i) 직원, 연맹과 사업 및 기타 관계를 갖는 사람, 연방 또는 연방과 관련된 사무실이나 기타 시설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대한 모든 조치의 효과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
 - (ii) 연맹의 장기 계획으로 발생하는 이익 및 연맹의 지속적인 독립을 통해 이러한 이익을 가장 잘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연맹의 장단기 이익.
 - (iii) 연맹의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모든 개인의 (과거, 명시적, 잠재적) 자원, 의도 및 행동.
 - (iv) 기타 모든 관련 요소.

이사회, 이사회 위원 및 개별 이사는 연맹의 최대 이익 또는 어떤 조치의 효과를 고려하는 데 있어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법인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세적이거나 지배적인 이익 또는 요소로 간주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이익 및 요소에 대한 고려는 신의 성실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14 <u>정족수, 대행 방식 및 정회</u>. 본 조 8.12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에 재임 중인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해야 한다. 각 이사는 한 장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출석하여 투표한 이사의 과반수는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수시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이사들은 이사회 전체로서만 행동해야 하며 개별 이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단, 이사회 회의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조치가 명시된 서면을 통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 회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재임 중인 모든 이사가 해당 문건 또는 복사본에 서명하여 연맹 총무/재무이사를 통해 상임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8.15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또는 임원; 정족수. 다음의 경우, 연맹과 한 명 이상의 연맹 이사 간, 또는 연맹과 다른 연맹, 협력사, 협회 또는 한 명 이상의 이사가 이사나 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정적이해관계를 가진 기타 조직 간의 어떠한 계약 또는 거래는 그러한 이유 만으로, 또는 해당 이사가 그러한계약이나 거래를 승인하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해 관계에 있는 이사(들)이 투표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

- (a) 해당 관계 또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그리고 계약 혹은 거래와 관련된 주요 사실이 이사회에 공개되거나 알려지고, 이사회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들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의 과반수 투표로 해당 계약 또는 거래를 선의로 승인한 경우; 또는
- (b) 이사회가 인가, 승인 혹은 비준할 당시 해당 계약이나 거래를 연맹이 공정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본 항에 명시된 거래나 계약을 승인할 이사회 회의의 정족수를 결정할 때 포함될수 있다.

8.16 <u>보수.</u>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모든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타 이사로서의 활동에 대해 어떠한 보수나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8.17 \underline{u} 연맹은 매년 9월 1일 이전에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1일자로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회원은 전원 참석해야 한다. 세미나는 이사회의 적절한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8.18 <u>이사의 개인적 책임의 제한.</u> 이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이사가 펜실베이니아 비영리 법인 법에 규정된 직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 (b) 그러한 위반과 불이행이 개인적 거래에 기인하거나, 고의적인 부정행위, 또는, 무모함으로 인한 경우.

이 조항은 (i) 형법에 따른 이사의 책임이나 의무, 또는, (ii) 지방, 주, 또는, 연방 법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19 보상. 연맹의 이사, 간부 직원, 직원 및 대리인은 펜실베이니아 비영리 법인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무 수행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비용, 경비 및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다. 민사, 또는, 형사사건,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연맹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로 인하여 변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연맹의 변호 대리인이 그에 따른 비용을 결과적으로 연맹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결정되는 특정 사건에 한하여, 그러한 법적 행위, 소송, 또는 법적 절차의 최종 결정 이전에 법적 소요 비용을 그러한 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또는, 변호 대리인을 대신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맹이 지불할 수 있다. 그러한 각 보상은 연맹의 변호 대리인 역할을 이미 종료한 개인에게도 계속 지급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인의 상속인, 집행인 및 관리인에게도 그 혜택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연맹을 대리하는 각 개인은 해당 법규에 명시된 보상 청구권에 따라 그러한 변호 업무를 할 수 있다.

제IX조 위원회

9.01 이사회의 위원회. 이사회는 상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기타 임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한 명 이상의 이사나 이사회 전체로 구성된다. 각 이사는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이사회 이사는 아니더라도 이사회가 선발한 한 명 이상의 소롭티미스트 회원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사회의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도에 따라 활동한다. 상임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재무위원회 연맹의 재무 사안을 검토한다. 총무/재무이사는 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a) 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
- 법률 및 의결 위원회 본 정관, 연맹 절차, 결의안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접수한다. (b)

9.02 연맹 모금 위원회는 SIA 이사회를 통해 국제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기부, 기증, 후원 및 유산 기부 등을 요청 및 유치하며, 이사회의 신의 성실의 책임을 준수하는 가운데 기금 조성에 관해 권고할 책임을 갖는다. 연맹 모금 위원회는 최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SIA 이사회에서 판단한다:

- SIA 이사회가 임명하는 임기 1년의 공동위원장 2명: (a)
- SIA 이사회가 임명하는 임기 1년의 차기 공동위원장 2명. 두 명의 차기 공동위원장은 차기 (b) 공동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공동위원장직을 승계한다;
- 이사회가 임명하는 임기 1년의 SIA 이사회 연락 담당 위원 1명. 이사회 연락 담당 위원이 (c) 이사회 임기 첫 해에 임명된 경우, 이사회 임기 2년 차에 이사회 연락 담당자로 재임명될 수 있다;

(d) SIA 이사회는 임기 2년의 국가 대표 임원을 최대 9명까지 임명하며, 2년 연속으로 역임하도록 재임명할 수 있다. 국가 대표 임원은 연맹 모금위원회에서 소속 국가 집단을 대표하고 대변인 역할을 한다.

9.03 <u>권한</u>. 어떤 위원회도 본 정관에 의해 혹은 1988 펜실베이니아 비영리 법인 법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이나 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러한 권한과 직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는 있다.

제x조 회계 사항

10.01 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에 시작한다.

10.02 <u>회비</u>. 각 클럽은 다음 일정에 따라 종신 회원을 제외하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회원 자격이 있는 회원 1인당 미화 \$52의 연회비를 7월 1일까지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5-2016 미화 \$68; 2016-2017 미화 \$70; 2017-2018 미화 \$72. 2018-2019 회계연도 초에, 이사회는 전년도 회비 금액과 예상 생계비 조정 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연회비를 결정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적정한 금액으로 반올림이나 반내림을 적용하여 회비 금액을 정한다. 이사회는 회비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년도 회비와 같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각 클럽은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종신회원으로 지정된 회원 1인당 미화 \$10을 해당 날짜의 종신회원 수만큼 7월 1일까지 납부한다. 종신회원 연회비는 의무적 보험 가입비와 <Best for Women> 구독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10.03 <u>SI 회비</u>. 각 클럽은 SI 이사회가 규정한 국제소롭티미스트의 회비도 납부해야 한다. 정확한 회비 금액은 국제소롭티미스트의 각 회원이 지불하도록 연맹에 청구한 연회비를 이사회가 최적의 환율을 적용하여 영국 파운드로 지정한 금액이다.

10.04 <u>요금</u>. 각 클럽은 이사회가 지정한 추가 요금을 연맹에 납부한다. (예, 신규 회원 요금, 연체료, 총회 회비, 구독료, 보험료, 라이센싱 요금). 이러한 요금의 금액과 납부 가한은 연맹 절차에 명시되며 클럽에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공지한다.

10.05 <u>회비와 요금의 조정</u>. 총회를 위한 회비 및 기타 부과액의 금액과 납부 기한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경제적 상황 또는 회비 납부가 클럽이나 회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를 고려하여 모든 회비를 임시로 인상, 인하 혹은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0.06 <u>감사</u>. 연맹의 장부는 외부 공인 회계 법인에 의해 이사회가 지시한 때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10.07 <u>계약</u>. 본 정관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이나 이행 또는 연맹을 대신하여 증서를 교부할 임원 혹은 대표자의 승인은 이사회가 담당한다. 이와 같은 권한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경우에 국한될 수 있다.

제XI조 의회 권한

본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한 의회 권한은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최신판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제XII조 개정

12.01 개정안. 2/3가 찬성하는 경우:

- (a) 클럽이나 리전 또는 연맹 이사회는 차기 2년 주기 총회에서 다음 사안에 대한 심의를 제안할 수 있다.
 - (i) 연맹 규정 개정;
 - (ii) 연맹의 정관 개정; 또는
 - (iii) 프로그램 현안에 대한 조치를 제안하는 결의안

제안서에는 반드시 해당 제안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클럽 및 리전은 제안서를 총회가 열리는 해의 전년도 9월 1일까지 연맹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의 법률 및 재결 위원회는 모든 제안을 검토하고 명확성을 위해 모든 제안을 통합하거나 편집할 수 있지만 각제안의 핵심과 의도는 보존해야 한다. 위원회가 연맹의 세금 면제 혜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연맹의 법률적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연맹이 달성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는 제안자에게 반환된다.이때 제안자는 이사회에 이를 재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수락, 거절 또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제안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관계 없이 해당

제안을 총회에서 논의하고 우편 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모든 제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와 권고안을 첨부할 수 있다.

연맹 이사회는 연맹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신의 성실의 (b) 책임을 수행해야 할 때마다 해당 연맹 정관의 개정 심의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에는 반드시 해당 제안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2.02 심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심의되어야 한다:

- 대의원은 과반수 투표로 제안된 정관 개정과 총회 소집에 포함된 결의안을 개정할 수 있다. (a) 신규 정관 개정과 총회 소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결의안 심의는 총회의 같은 회기 중 미리 통보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대의원 ¾의 투표로 가능하다. 신규 제안은 과반수 투표로 개정한다.
- 2년 주기 총회 안건에 미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SIA 정관 개정안이 발생할 경우, (b) 이사회에서 클럽에게 이메일이나 그 외 정례적인 소통 경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을 통보한다. 상기 개정안은 클럽의 의견을 받고자 최소 30일간 공표한다. SIA 이사회는 의견 제출 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 피드백이나 개정안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한다.

12.03 투표. 표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매번 총회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각 제안서 및 결의안의 원본 및 개정본을 명시한 우편 (a) 투표지가 총회 투표인단의 권고안, 법률 및 의결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양호 상태의 클럽에 발송한다. 투표용지는 발송 이후 6o일 이내에 본부로 회신되어야 한다. 회신 및 투표한 사람의 2/3가 찬성해야 해당 사안이 승인된다.
- 12.02 (b)에 명시된 클럽의 의견 수렴 기간까지 거친 이사회 측 개정안을 최종 공표하면 (b)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후속 의견이나 피드백과 함께 개정안이 적시된 우편 투표용지가 회비를 완납한 양호 상태의 클럽에 발송된다. 투표용지는 발송 이후 60일 이내에 본부로 회신되어야 한다. 회신 및 투표한 사람의 2/3가 천성해야 해당 안건이 승인된다.

12.04 우편 투표. 정관 개정 시 실시되는 우편 투표는 펜실베이니아 주 비영리 법인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터넷 등의 전자 기술을 활용해 이뤄진다.

12.05 <u>절차 개정</u>. 연맹 절차에 대한 개정은 클럽, 리전 또는 이사회가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다. 법률 및 의결위원회는 다음 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2.06 <u>국가별/지방별 법률 준수</u>. 이사회가 검토한 후, 본 정관은 각 국가 혹은 지방의 법률 준수를 위해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정은 연맹의 목적 및 목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XIII조 해산

법인이 해산할 시, 이사회는 기관의 정관에 규정된 대로 법인의 모든 부채를 지불하거나 지불을 약정한 후법인의 모든 자산을 해당 법인의 면세 목적만을 위해 처분하거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세법 제501(c)(3)절에 의거하여 면세 기관으로 인정되는 자선, 교육 또는 과학 목적으로만 조직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일체의 자산은 해당 법인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민사소송법원에 의해 해당 면제 목적으로만 처분되어야 한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개인적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잔여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